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안

의안 번호	140
----------	-----

제 출 일 : 2023. 3. 8.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북부권 시군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3. 기본 현황

- (명 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 (회원수) 경기도 북부권 10개 시군 *회장도시 : 구리시
 -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4. 규약 주요 내용

- (제3조) 기능
 - 경기도 북부권 시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의 교환
 - 기타 협의회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회의
 -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 시 수시 개최
 - (제13조) 경비부담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
 -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은 연간 200만원의 회비 납부
 - 회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시에만 집행

5. 향후 계획

- 2023. 3월 중 : 협의회 규약 고시

붙임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규약 1부. 끝.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2023. 1. 1.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경기도 북부권 시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3.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
6.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경기도 북부권 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양특례시장, 남양주시장, 파주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구리

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가평군수, 연천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지명된 총무는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사항 결정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사군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 간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으로 선출된 사군의 기획실장(담당관),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은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실장(담당관)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총무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결과를 협의회 보고 전에 총무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은 연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집행한다.

제14조(회계) ① 협의회 회계 정리 사항은 총무가 관장하고 회비 사용 시 차회 정기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② 총무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총무가 속한 시·군의 기획담당이 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